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제9회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7. 2. 28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전화: 02-747-6887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94,
206호(와룡동, 동원빌딩)

홈페이지: <http://www.chsc.or.kr>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6년 사업 평가(안)

1. 2016년 활동 정리

가. 이슈페이퍼 및 에디토리얼 발간

- 1) 경구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 : 정책적 결정인가 정치적 고려인가? (2016.4.19.)
- 2) 박근혜 정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2016.6.15.)
- 3) HPV(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논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6.7.25.)

나. 주관 연구 프로젝트(인의협 이름으로 수주)

- 국가인권위원회 발주 <바이오정보 수집, 이용 실태조사>

다. 소책자 발간

-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으로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발간

라. 정기간행물 발행

-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의료와사회> 3-5호 발간

마. 토론회 및 포럼 주최

- GM 논쟁의 최전선 : GMO 확대 그리고 글리포세이트 위험 논쟁 (2016. 5.17)
- 한국 보건의료 저성장 담론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의산정 복합체의 등장과 신의 료화 (2016.10.22.)
- 낙태죄 폐지 운동의 의미와 전망 (2016. 10.31)

바. 소모임 운영

1) 젠더와 건강팀

- 우리가 만드는 피임사전 발간
- 낙태권 관련 연대활동 참여
- 성과 재생산 포럼 공동 주최

2) 과학기술과 건강팀

- '유전자, 세포, 뇌' 관련 세미나팀 운영
-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료화와 약물의존화 문제에 대한 세미나 진행

3) 먹거리와 건강팀

- 자본주의 시스템과 먹거리 체계에 대한 세미나 진행

- 식품기업에 의해 마케팅되고 있는 ‘영양주의 환원론’비판 세미나 진행.
-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 (안) 에 대한 건강과 안전, 먹거리정의적 관점에서 의견 개진 및 토론 참여
- 건강불평등과 먹거리 정의, 새로운 대안먹거리 체계에 대한 자료 정리 및 세미나 진행 중

4) 건강정보와 인권팀

- 개인 의료정보 및 건강정보의 상업화 문제 세미나 진행
- (가칭) 건강정보 보호법 제정안 마련

사. 대중 강좌

- 노원상상이룸센터와 함께 2차례 고교생 대상 <몸, 생명, 사회> 인문 강좌 주최

아. 기타 연대 활동 및 협동 연구

- 성과 재생산 포럼 참여(젠더와건강팀)
- 몬산토 반대 국제행동의 날 기념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조직 및 발표
- 가톨릭대 주최 <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발표 참여(변혜진)
-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네트워크 참여(이상윤)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 센터’ 설립 자문위원 참여(변혜진)
- <아동친화도시로서 서울시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참여(변혜진)
- 서울시 먹거리 마스터 플랜(안) 논의 참여(먹거리와건강팀)

2. 총괄 평가

가. 내용적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활동을 하였음

- 4차 산업 혁명 레토릭이 활성화되어 가는 형국에서 이것이 가지는 건강/의료적 의미를 잘 밝혀 사회적 논의가 확장되는 데 기여하였음
 - 신의료화, 의산정 복합체의 등장, 생명/건강 산업의 신자유주의적 프로젝트로 맥락화함, 바이오 정보 이슈 제기
- 한국 사회의 페미니즘 이슈 확장 맥락 속에서 여성의 성 및 재생산권 관련 논의 및 활동에 기여하였음
 - 피임사전 발간, 임신 중단권 관련 활동 등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운동적 연결 고리를 확장하였음
 - GMO 및 글리포세이트 이슈, 먹거리 정의 이슈 등

나. 연구사업의 형식과 내용이 점차 체계화되어 가고 있음

- 연구 활동은 이슈페이퍼 발간, 월레포럼, 소모임 운영을 근간으로 하는 기존 과정 유지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식화된 논문적 글쓰기 및 내용 생산보다는 대중적 소통을 고민하는 내용 생산 및 소통 체계 고민
 - 소책자 발간, <의료와사회> 발간 등
-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한국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슈들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작업
 - <모비드 심팀> 번역 발간, 바이오 정보 관련 연구보고서 작성
- 부족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소모임을 활성화함
 - 젠더와건강팀, 먹거리와 건강팀, 과학기술과 건강팀 등

3. 사업, 분야별 성과와 한계

가. 연구 활동 : 성과가 있고 우선순위로 필요한 영역에 집중 필요

- 보건의료 상업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과 건강/의료(건강정보, 빅데이터, 정밀의료 등) 이슈, 성 건강 및 재생산권 이슈, 먹거리 정의 이슈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의 내실화와 보다 깊이있는 사회문제 이슈화가 필요함
-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 생산 중심 체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책자 및 소통적(내러티브적) 글쓰기 중심 체계로 점진적 변화 필요
- 의미 있는 국제 보건의료/ 건강권 이슈에 대한 지속적 발굴 및 소개, 대중화 필요

나.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협업 강화 필요

- 보편적 건강권 그리고 대안을 위한 다양한 관련 의제들을 연결시키는데, 지역사회의 역할과 관련 분야의 오래된 시민사회와의 능동적 협업이 요구됨
- 최근 비감염성질환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대안 먹거리 체계 마련을 위해 싸워온 운동 단체 등과 형성된 소통 및 협업 체계를 더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 마을단위를 포함한 지방정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와 감시, 모니터링, 개입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6년 결산(안)

대차대조표(2016.1.1 - 12.31) (단위:원)

자산	금액	백분율	부채	금액
유동자산	17,382,496	68.5%		
사무실보증금	8,000,000	31.5%		
합계	25,382,496	100%	부채합계	0
			순자산	25,382,496

운영성과표(2016.1.1 - 12.31) (단위:원)

수익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이월	11,730,763	16.6%	인건비	31,600,000	59.4%
정기회비	42,298,950	59.9%	사업비	8,348,480	15.7%
후원회비	9,439,880	13.4%	운영비	13,263,301	24.9%
보조금 (서울시여성 발전기금)	7,094,000	10.0%			
기타수익	30,684	0.04%			
합계	70,594,277	100.0%	합계	53,211,781	100.0%
			이월	17,382,496	

운영성과표 세부사항 (2016.1.1 - 12.31) (단위:원)

관	항	목	적요	수입	지출	
수입	목적사업외 수입	이자수입 등		12,753		
	이월금			11,730,763		
	정기회비			42,298,950		
	후원회비	개인후원	첼더건강팀, 노원학생교육팀	1,239,880		
	후원회비	단체후원	약준모(600만) 시민과학센터(200만) 반핵의사회(20만)	8,200,000		
	보조금		서울시여성발전기금	7,094,000		
	기타수익	소책자판매 등	소책자판매, 프로젝트잔액이월	17,931		
수입 소계				70,594,277		
지출	사업비	소모임지원			1,125,480	
		소책자발간	피임사전 발간		7,094,000	
		월레포럼등			79,000	
		연대사업			50,000	
	사업비 소계				8,348,480	
	운영비	비품구입비				319,530
		통신비				428,600
		난방비				44,000
		월세등				11,072,311
		기타운영비	CMS수수료등			1,039,950
		자료구입비	한겨레21 등			232,700
		잡비	경조사 등			68,830
		회의비	운영위			57,380
	운영비 소계				21,535,571	
인건비	인건비	임금+상여금			31,600,000	
지출 소계				53,211,781		
잔액				17,382,496		

표 4 수입 부문 예산 대비 결산 비교

수입 항목	2016년 예산	2016년 결산	예산 대비 결산 비율
회원회비	47,000,000	42,298,950	90.0%
후원회비	6,000,000	9,439,880	157.3%
기타	12,000,000	18,855,447	157.1%
계	65,000,000	70,594,277	108.6%

표 5 지출 부문 예산 대비 결산 비교

지출	2016년 예산	2016년 결산	예산 대비 결산 비율
인건비	44,000,000	31,600,000	71.8%
사업비	6,000,000	8,348,480	139.1%
운영비	15,000,000	13,263,301	88.4%
총계	65,000,000	53,211,781	81.9%

<참고> 2015년 손익계산서 (단위:원)

수입			지출		
항목	금액	비율	항목	금액	비율
이월	764,540	1.5%	인건비	21,006,300	55.6%
회원회비	36,773,905	74.2%	사업비	3,722,300	9.8%
후원회비	11,883,000	24.0%	운영비	13,084,711	34.6%
금융소득	3,129	0.01%			
수익사업	119,500	0.2%			
합계	49,544,074		합계	37,813,311	100.0%
			이월	11,730,763	

2016년 신입 회원 수 : 6명

2016년 회비 납부 해지 회원 수 : 6명

2017년 2월 28일 현재 총 회비 회원 수 : 116명

2016년 결산 감사보고서

총평

2016년 12월 31일 현재 결산서를 기준으로 2016년 회계기간 동안 매월 회계장부, 영수증 및 입출 증빙서류를 대조, 확인하여 수입, 지출 및 예산 집행의 적적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전년도에 비해 17,382,496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에 수행한 연대사업 수익금 이월과 회비 증가에 따른 회비수입이 증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예산액의 20%만 사용한 사업비 지출의 감소에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도에는 연구프로젝트 사업수행, 출판사업 등 수입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상근, 반상근 등 연구인력 충원을 통해 대 회원, 대 시민 강좌나 포럼 등 적극적인 대내외활동을 통해 재정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부문별 평가

1. 수입

‘건강과 대안’ 2016년 총 수입은 70,594,277원으로 2015년 49,544,074원에 비해 약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도에서 1,170만원의 이월금 있었고 회비수입이 2015년 3,670만원에서 4,230만원으로 약 56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학생 교육사업이나 노조 강연 등에 의한 회원후원금과 의료연대, 여성재단 등 후원단체 후원금 수입금은 전년도 대비 2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 지출

본회 2016년 총 지출은 53,211,781원으로 상근활동가 퇴직과 출산휴가로 인건비 지출이 적었던 2015년 3780만원에 비해 약 1,540만원 증가였습니다. 운영비는 1300여만원으로 예년과 비슷하고 인건비는 2100만원에서 316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비 부분에서는 370만에서 834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총괄해 보면 1700여 만원의 흑자를 균형재정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회비수입과 사무실 공동 사용에 의한 수입 등을 합치면 약 5000만원으로 본회 작년 지출을 감당할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상근연구원 1인에게 집중된 사업영역 활성화를 위해 연구인원을 충원하여 새로운 연구과제 개발, 정책연구, 대 회원, 대 시민 교육활동 등 활발한 대내외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 강연이나 교육을 통해 받은 회원들의 기부 형식의 후원금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회계처리

매 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월별 수입과 지출, 후원회비 수입과 후원단체 수입, 연대 사업이나 연구 프로젝트 수입 등에 대한 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건강과 대안’의 임원, 회원, 상근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2월 28일

감사 정성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7년 사업 계획(안)

1.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고려 사항

가. 2016년 국내외적 주요 건강 이슈

- 난민(이주민) 건강 문제 부각
- 부의 불평등 심화
- 미국 대선 결과 및 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지각 변동
- 기후 변화 (파리 협정)
- 점점 더 심해지는 대기오염
- 영국, 미국 일부 주 등에서 설탕세, 소다세 도입
-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성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일반논평 채택
- 글리포세이트 발암성 논쟁
-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편집 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논란
- 폴란드 낙태 규제 반대 운동 등 전세계적으로 임신중지권 요구 운동 확산

나. 2017년 국내외적 주요 건강 이슈 예상

- “One Health”
- 대기오염
- 4차 산업혁명과 의료 : Telemedicine, AI, 3D 프린터 등
- 제약기업과 환자 집단의 전략적 제휴 강화
- “ value-based payment”
- 의료, 제약, 화학, 농약 기업들의 인수, 합병
- 식품, 운동 등 질병 예방 전략에 대한 관심 증가

다. 건강과대안의 사회적 positioning

- 건강을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접근하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다학제적 연구 공간
- 1차 자료 생성보다는 관련 연구 내용의 대중화, 조직화 등에 중심을 두고 실천적 활동을 기획하는 데 중점을 두는 활동 방향
-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한국적 상황에서 논의나 활동이 미진한 영역의 발굴, 소개, 활동 기획

라. 건강과대안 2017년 활동 논의시 고려지점

- 대통령 선거
- 불평등 증가, 지역사회

- 4차 산업혁명 레토릭
- 상근 연구위원의 충원, 역할 재정립

2. 사업 목표 및 방향

- 전략적 이슈에 대한 연구 내용 심화
- 내용 생산 및 소통 체계 정비
-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연계 강화, 정책 개입 활동에 대한 모델 시험

3. 분야별 사업 계획

가. 전략적 이슈에 대한 연구 내용 심화

- 4차 산업혁명과 건강/의료(건강정보, 빅데이터, 정밀의료 등) 이슈, 성 건강 및 재생산권 이슈, 먹거리 정의 이슈 등에 대한 역량 투여
-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들이 중점 과제 연구 진행에 일정 정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중점 연구를 진행
- 소모임 활성화, 역량 강화, 활동 지원
- 새로운 이슈 발굴 및 확산 : 번역 활동 강화

나. 내용 생산 및 소통 체계 정비

- 정부, 단체, 노동조합 등 외부 프로젝트 중 정부의 프로젝트는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프로젝트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독립적 국가 기구의 프로젝트는 수행하는 것으로 함.
-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기준, 상임 연구위원 1인+ 비상임연구원 1인 체제, 자원활동 연구원을 모집하여 운영함.
- 논문화된 내용 생산보다는 소책자 발간, 의료와사회 발간, 단행본 발간 등 대중적 글쓰기의 방향 강화

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연계 강화, 정책 개입 활동에 대한 모색

- 먹거리 정의 이슈, 성 권리 및 재생산권 이슈, 건강 불평등 이슈 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 강화
-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 참여, 서울시 환경보건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책 개입 활동 모색

<참고> 젠더와 건강팀 2017년 활동계획

1. 피임사전 후속작업

번역 - 플랫폼 고민

미주, 각주, 출처작업

독자 피드백 이벤트

출판기념회 (3월 중)

2. 올해 이슈 키워드

HPV, 낙태권, 재생산윤리, 항노화

3. 오픈세미나 형식을 4회정도 확정해놓고, 나머지는 개별 프로젝트 중심으로

1) 오픈세미나 가안

최선의 낙태 / HPV 백신 / 섹슈얼리티와 젠더건강 / 여성-생애주기-의료정책은 온
당한가(HALO 접근법)

2) 젠더팀 개인 or 소그룹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사업들

미폐공(미폐프리스트톤 수입 공대위)

HPV

서울시 성건강수첩

시사인 격월간 여성건강 칼럼

성과재생산포럼

전환치료공대위

트랜스젠더 연구 (개인참여)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2017년 예산(안)

수입			
항목	2017년	2016년	전년대비비율
회원회비	46,000,000	42,298,950	108.7%
후원회비	10,000,000	9,439,880	105.9%
기타	19,000,000	11,761,447	161.5%
계	75,000,000	63,500,277	118.1%

지출			
항목	2017년	2016년	전년대비비율
인건비	55,000,000	31,600,000	174.1%
사업비	6,000,000	1,254,480	478.3%
운영비	14,000,000	13,263,301	105.6%
계	75,000,000	46,117,781	162.6%

■ 수입 항목 예산 책정 근거

- 회원회비는 10% 정도 증액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 후원회비는 시민과학센터 후원금과 개인 후원 예상액으로 설정하였음
- 기타 항목은 전년도 이월금인 17,382,496원에 이자소득, 소책자 판매 수익 등을 더해 산정하였음

■ 지출 항목 예산 책정 근거

- 임금은 상근연구위원 1인, 반상근연구원 1인으로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며, 반상근 연구원의 연 보수액은 2천 만원으로 책정하였음(상근 연구위원은 4대보험 가입 예정)
- 사업비는 2016년 지출액인 1,254,480 원은 과소지출된 것으로 판단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음
- 운영비는 월세 증액 등을 고려하여 5.6% 증액하였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관

2008년 10월 18일 제정
2015년 3월 28일 일부 개정
2016년 3월 4일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단체는 그 명칭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하 연구공동체라 함)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 연구공동체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는 국내 필요한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1. 이 연구공동체는 전인류의 건강이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되는 건강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특히 본 연구공동체는 세계화 등 새로운 사회 현상에 따른 건강 문제, 전지구적 건강 문제, 건강불평등 등에 대한 연구 영역에 집중하고, 다학제간 통합 연구를 지향한다.

제 4 조 (사업)

이 연구공동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올바른 국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개최와 교육, 출판 등의 사업
2. 건강사회의 모형개발과 그 실현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연구
3. 위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물, 정기간행물 간행 및 홍보사업
4. 정부, 국회 및 기타 요로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건의
5. 건강사회 형성을 위해 활동하는 다른 나라 단체와의 국제 연대
6. 기타 연구공동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 (공직선거 관여 금지)

- ① 연구공동체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공동체의 대표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 연구공동체의 사업에 적극 참여 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 자료회원 등으로 한다.
3. 후원회원과 자료회원은 이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나. 의결권

다. 본 연구공동체가 보유한 시설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비의 납부와 정관의 준수 및 본 연구공동체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활동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3.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회비를 미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본 연구공동체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탈퇴는 본 연구공동체의 소속지부에 탈퇴의사를 서면 또는 구두로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 9 조 (징계)

1. 본 연구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 가. 회원으로서의 회칙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나. 본 연구공동체의 각종 회의와 행사에 상당기간 참석하지 아니한 자.
 - 다.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 라.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2.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행하되 결정전에 그 대상자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견책으로 한다.

제 3 장 임원과 관련 직책

제 10 조 (임원의 구성)

본 연구공동체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
- 나. 부대표
- 다. 감사
- 라. 편집위원장

제 11 조 (임원의 자격과 제한)

1. 임원은 본 연구공동체의 회원으로서 공직에 있지 않는 자라야 한다.
2. 임원은 임원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 3호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대표, 부대표,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및 임명)

1. 대표,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부대표, 편집위원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2. 임기 중 보선되는 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4 조 (대표와 부대표의 임무)

1. 대표는 본 연구공동체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무를 통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의 유고 시에는 대표가 지명하는 부대표가 대행한다.

제 15 조 (감사의 임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공동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연구공동체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6 조 (편집위원장의 임무)

편집위원장은 대표의 감독 하에 연구공동체의 출판, 편집 업무를 총괄한다.

제 17 조 (명예대표)

1. 명예대표는 본 연구공동체 역대 대표 중에서 추대할 수 있다.
2. 명예대표는 임원 및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 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에 관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 18 조 (고문)

본 연구공동체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9 조 (자문위원)

본 연구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지위와 구성)

1. 총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최고의결기구이다.
2. 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가입된 모든 정회원들로 구성한다.

제 21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1년마다 개최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4. 총회는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개최 1주일 전까지 문서로 발송하여 소집한

다.

제 22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3 조 (성원과 의결)

1.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의결권은 다른 회원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4 조 (총회의 제척사유)

대표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대표 또는 임원 자신과 단체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임 원 회

제 25 조 (지위와 구성)

1. 운영위원회는 본 연구공동체의 집행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부대표, 편집위원장, 감사를 포함하여 대표가 임명하는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26 조 (소집과 의결)

1. 정기운영위원회는 대표가 1개월마다 소집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는 대표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 27 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수립
3. 예산, 결산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재산관리
6. 주소지 변경 의결
7. 정관 변경 심의
8. 정관시행에 따르는 세칙과 규정의 재개정
9. 회원의 징계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11. 지부의 창설 및 승인
12. 각 지부의 운영 및 제반 활동의 총괄
13. 기타 대표가 부의하거나 총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 6 장 연구조직과 위원회

제 28 조 (연구원)

1. 본 연구공동체의 연구 사업을 위하여 본 연구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연구원을 임명한다.
2. 연구원의 편제, 임무, 자격, 노동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29 조 (연구위원 위촉과 각종 위원회의 설치)

1. 대표는 연구 사업을 위하여 약간 명의 연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대표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 30 조 (재산의 구성)

1.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은 단체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1 조 (재산의 관리)

1. 본 연구공동체의 재산은 대표가 관리하고 재산관리의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2 조 (예산의 결산)

1. 대표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대표는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년 결산안으로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3 조 (회계년도)

본 연구공동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4조의2 (결산보고서 등의 공개)

- ① 대표는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 ⑥ 대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연구공동체의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본 연구공동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6 조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연구공동체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한다.

제 37 조 (정관 개정)

연구공동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8 조 (규칙 제정)

연구공동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9 장 부 칙

1. 본 연구공동체 정관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연구공동체의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